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0. 12 선고 2021가단10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33128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0. 12 선고 2021가단1045 판결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7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3. 30. 접수

제12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3260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. 12. 3. 'C은 원고에게 9,813,1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던 D은 2011. 2. 2.경 사망하였고 그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C, E, F이 있었는데, 이후 2020. 3. 30.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2. 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현저한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4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,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위와 같은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, 여기에서 '법률행위 있는 날'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해행위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날이 2011. 2. 2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

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. 4. 23.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(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날짜를 명기하지 아니하였고,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한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 이후에야 제출하였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완수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강원 강릉시 대115.6 ㎡

2. 위 지 상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63.60 ㎡

2층 41.99 ㎡

지하층 21.33㎡

